##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73 발의연월일 : 2025. 4. 30.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명옥

서천호 • 박준태 • 이달희

강승규 · 김상훈 · 최은석

김용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 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4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①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